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건설사업자 행정처분(영업정지)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건설사업자의 행정처분(영업정지) 사실을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7월 31일
경 기 도 지 사

상 호 (대표자)	소 재 지	건설업종 (등록번호)	처분내용	처분사유	처분근거
(주)해밀 엔지니어링 종합건설 (김종욱, 김진옥)	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용성3길 88 비이호 (안중읍)	건축공사업 (01-5506)	영업정지 5 개월 (2026. 8. 1. ~2026. 12. 31.)	건설업 등록기준 (기술능력·자본금) 미달 (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 10 조 위반)	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 83 조 제 3 호